(재)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**2026 - 127**호

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
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(R&D) 공고

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SW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의 최종 결과물 완성을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「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04. 28.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지원근거 및 관련규정

□ 지원근거

○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
- 제17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

○ 소프트웨어진흥법
- 제13조(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)

○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・지원을 위한 조례
- 제7조(지역산업의 육성지원)

□ 관련규정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○ 정보통신・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
○ 정보통신・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
○ 정보통신・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○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통운영요령

2. 지원개요

□ **사 업 명** :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(R&D)

□ **과제 수행기간** : 2026. 06. 01. ~ 2026. 11. 30. (6개월) 이내

□ **지원내용** : 우수아이디어의 제품화 완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지원

□ **지원대상** :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

□ **지원규모** : 기업당 60백만원 이내 / 3개 과제

※ 예산규모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세부 지원내용

○ **지원내용 :** SW·IT기술 기반의 우수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

○ **지원금액 :** 기업당 60백만원 이내, 3개 과제 선정

○ **지원방식 :** 단독(주관) 또는 컨소시엄

○ **지원자격 :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(2016~2026년 선정기업)**

사업비 지원기준	• 총사업비의 75% 이내
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	• **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: 총사업비의 25%이상** • **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: 민간부담금의 10%이상**
추진방식	① 주관 : 전북SW강소기업 *2016~2026년 선정기업 ② 참여 : 도내 기업 및 도내·외 대학, 연구기관 - 참여기업은 도내 소재 SW·IT기업이 아닐 경우 신규인력 인건비만 산정가능 - 도외 소재일 경우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가능
기술료 징수	• 총 도비 지원금의 10%, 단, 관련규정 따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※ 관련규정 :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"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" 준용 •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2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% 감면 •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기술료 면제 •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함
비 고	•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진행예정(발급비용은 별도부담) • **공고일 이전 3개년 연속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지원불가**

< 예시 : 지원금 6천만원의 최소 매칭금액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지원금(A) (총 사업비의 75% 이내)	민간부담금 (총 사업비의 25% 이상)			총 사업비 (A+D)	비고
		현금(B)	현물(C)	소계(D) (B+C)		
중소기업	60,000	2,000 (민간부담금의 10% 이상)	18,000	20,000	80,000	

3. 추진 절차

사업 공고 / 신청접수	·전북테크노파크	• 사업 공고	`26.4.28.(화)~5.14.(목)
⬇			
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	·평가위원회	• 신청기업 서류검토**(서면평가)** • **현장방문(도내 사업장 사실확인)** • 평가위원회**(발표평가)** 개최	`26.5.18.(월) ~`26.5.29.(금) 中 개최 예정
⬇			
협 약	·전북테크노파크 →선정기업	• 협약 후 사업진행	`26. 6월 중
⬇			
중간점검	·전북테크노파크 →선정기업	• 기업별 사업진도 및 사업비 사용실적 중간점검	`26. 8월
⬇			
사업완료 및 성과평가	·전북테크노파크	• 사업완료(최종점검 및 최종평가)	`26. 12월
⬇			
성과활용 및 사후관리	·전북테크노파크	• 사업비 정산/기술료 징수 등 •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3년	`26. 12월 ~

※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(선정 대면평가 등)이 변경 될 수 있으며, 접수된 모든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예정임

4. 신청 및 접수요령

□ 공고기간 : 2026. 4. 28.(화) ~ 5. 14.(목)

○ 전북테크노파크(www.jbtp.or.kr) 홈페이지 사업공고

○ 전북테크노파크 R&D종합정보시스템(https://rnd.jbtp.or.kr) 홈페이지 사업공고

※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

□ 접수기간 : 2026. 4. 28.(화) ~ 5. 14.(목) 17:00까지

➔ **(유의사항)** ① **전산접수(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)만 가능**하며,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 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

(※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 탈락되며 접수 불가사항 당일 통보예정)

② **접수마감일은 데이터 접속증가로 인하여 종료 1시간 전 반드시 조기 입력완료 요망**

□ 신청(접수)요령

① 전북특별자치도R&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[과제신청]에서 접수

②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"*.zip" 파일명을 "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_신청서류_(기업명)"으로 변경하여 업로드

No.	구 비 서 류	양식	비고
1	사업계획서 (직인필수)	서식1	주관
2	신규과제 자기진단서	서식2	주관,참여
3	과제 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	서식3	주관,참여
4	참여의사 확인서	서식4	주관
5	민간부담금(현금,현물) 출자 확약서	서식5	주관,참여
6	사업자등록증	-	주관,참여
7	4대보험 가입증명서 (공고일 기준)	-	주관,참여
8	재무제표('25~'24년도)*	-	주관,참여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-	주관,참여
10	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	-	주관
11	발표자료	-	주관

*** 25년도 재무제표 경우 회계법인, 세무서 등에서 공인(결산확정)된 증빙자료 제출**

➔ **(유의사항)** 관련 규정 근거 최근 결산기준 **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**
(2025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일 경우도 포함)

[공통사항]

1. 제출서류 PDF 변환 시, 반드시 기본인쇄(1페이지 1쪽)로 설정요망(1페이지 2쪽 변환 불허)
2. 본사가 도외일 경우, 입주계약서,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3.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
예시) 재무제표 제출 시 2025, 2024년 순으로 정리후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
4.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

□ 문의처 : 전북테크노파크 가상융합팀 곽채송 주임연구원

Tel: 063-226-7150 / E-mail: rhkrcothd@jbtp.or.kr

5. 평가항목

□ 선정절차

① **서면평가** : 제출서류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

② **현장점검** : 사업장 사실확인 및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
③ **선정평가(발표평가)** : 신청과제별 총괄책임자 발표(발표, 질의 30분 내외)

④ **과제선정** : 평가결과에 의해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·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

➔ **(유의사항)** ①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② 서면/선정평가 모두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"70점"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※ 적정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공고에서 **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**

□ 평가기준

❍ **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, 상용화 성공 가능성,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**

6. 기타 유의사항

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➔ **(유의사항)**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

❍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* 지원규모, 지원기간, 지원분야, 주관기관 자격,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

❍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
*** (유사여부 확인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"과제참여·관리→차별성검토"**

- 단,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(평가위원회 의견 따름)

❍ 주관기관(총괄책임자 포함), 공동연구기관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*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납부,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

❍ (영리기관의 경우)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공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을 경우

-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* 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* 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

- 최근(2025년 또는 2024년)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

* 2025년 또는 2024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(자본전액잠식) 해당될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취소, 협약해약 될 수 있음
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일 경우

□ 청년고용 : 과제당 1명이상 신규고용 권고

❍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1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산정

*** 신규채용 내부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내부 연구원도 인정**
***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: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(채용시점 기준)**

❍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(예정) 확인서를 제출. 단,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

□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% 이상, 주관/참여기관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

□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"성공"으로 판정될 경우, 성공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년간 분할납부 가능
(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%를 감면)

□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 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□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4.9.27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· 보상금 ·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(이하"공공재정지급금"이라 한다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붙임 1 사업비 작성 가이드라인

<table>
<tr><th>세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인건비</td><td>□ 내부인건비
① 기업 :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(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)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,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세부 산정 기준</th></tr>
<tr><td>1년 이상인 자</td><td>-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X 12개월 X 참여율</td></tr>
<tr><td>1년 미만인 자</td><td>-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X 12개월 X 참여율</td></tr>
</table>
※ 1년 미만인자 : 근무년수 1년 미만으로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 알 수 없는 경우
※ 대표이사는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
② 대학 및 출연연 :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%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가능. 단,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
③ 공통적용 :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
④ 학생연구원 인건비 : 참여율 100%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- 박사후과정 : 3,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
- 박사과정 : 2,5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
- 석사과정 : 1,8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
- 학사이하 : 1,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
※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/승인 절차 없는 인건비 지급 발생시 변경 요청 시점 이전 지급 인건비 불인정</td></tr>
<tr><td>연구시설·장비비</td><td>①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(검수완료)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 비용
※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물품검수조서, 구입 사진 구비 필수
②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. 1천만원 이상 장비* 구입 시 구입계획서(견적서, 사용용도 첨부) 작성 필수
*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장비구입 가능
③ 수행기관 간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사용료·임차료는 산정 불가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세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구활동비</td><td>[사용 용도]
국내·외 출장여비,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전문가 활용비, 교육 훈련비, 시험분석료, 기술정보수집비, 문헌 구입비,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,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,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·품질컨설팅비 등</td></tr>
<tr><td>① 국내·외 출장여비
–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, 협약 시 자체 기준 자료 제출
–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하는 것은 불가, 자체 기준이 없을 시 전북테크노파크 국내·외 여비 기준으로 지급

② 전문가활용비
–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,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며,
–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
–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
– 사업협약 체결시 수행기관 전문가활용비 지급 자체 기준 자료 제출

③ 위탁정산수수료 :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,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
<table>
<tr><th>지원금 규모</th><th>표준 수수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5천만원 미만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<td>600천원
800천원
1,000천원</td><td>VAT미포함</td></tr>
</table>
<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>
<table>
<tr><th>참여기관 수</th><th>가산금</th></tr>
<tr><td>1개</td><td>표준수수료의 10%</td></tr>
<tr><td>2개 이상</td><td>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%씩 가산(2개(15%), 3개(20%))</td></tr>
</table>
④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

⑤ 교육·세미나·문헌구입비
–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
– 회의 및 교육·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, 강사료 등 일부항목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</td></tr>
</table>

세 목	내 용
	⑥ **행사개최비** -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(참여기관 포함)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장소 사용료 및 현수막 등 산정 가능 - 세미나 개최 증빙자료 필수 첨부(서명록, 행사사진 등) 등 ⑦ **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·품질컨설팅비** - 소프트웨어 품질검증,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,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⑧ **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** - 범용성 장비(PC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)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**※ 전화요금,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연구수당 편성불가**
연구재료비	**[사용 용도]** 시약 및 재료의 구입·사용 경비, 전산처리·관리비,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 경비
	① 시약 및 재료·사용 경비는 실 소요 금액으로 산정 ②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 **※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** ③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단순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 ※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
간접비	① **기관공통운영경비** : 대학·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**(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)** **⇒ 지원금의 5% 이내** ② **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** :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